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4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3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자문단 역량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교육 연수 등 지원근거 신설(안 제11조 신설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3. 2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- 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의결(2024. 3. 26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교육 연수 등) 구청장은 자문단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미래 성장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 <p><u>제11조</u> · <u>제12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11조(교육 연수 등) 구청장은 자 문단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효율 적인 미래성장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2조</u> · <u>제13조</u> (현행 제11조 및 제 12조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새마포담당관 손미경
연 락 처	02-3153-8532